

# 학보사 규정

제정 1995. 3. 1. 개정 2001. 9. 1.  
전문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사칙)** 본 사는 신문의 발행과 관련 사업을 통해 건전한 학풍을 진작 시키고 정확하고 올바른 비판정신을 함양하여 대학문화 활동과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사는 대경대학교 학보사라 칭하고 대경대학교 내에 둔다.

**제3조(제호)** 본 사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제호는 “대경학보” 라 한다.

**제4조(사업)** 본 사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학기간 “대경학보” 의 발행
2. 기타 신문 발행 목적에 따르는 학술 및 문화사업

## 제 2 장 임원 및 부서

**제5조(임원)** 1. 본 사에 사장 1인, 주간 1인을 둔다.

2. 사장은 총장이 되고, 본 보의 발행인으로서 본 사를 대표하며 발행·편집 및 인쇄에 관한 사무를 통괄한다.

3. 주간은 총장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며, 사장의 명을 받아 신문의 편집·제작 및 운영에 관하여 학생 임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6조(부서)** 본 사에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.

1. 기 획 부 : 예·결산을 담당하고 비품관리 및 기획보도를 담당한다.
2. 보도취재부 : 본 부서는 관계된 취재와 기사를 담당한다.
3. 문 화 부 : 문화보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4. 사 진 부 : 보도와 관련 된 사진촬영을 담당한다.
5. 편 집 부 : 대경학보의 발행에 관한 편집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
## 제 3장 기자선발 및 교육과 활동

**제7조(기자)** 본 사에 학기간 “대경학보” 의 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생 기사를 둔다.

1. 편집국장 : 편집국장은 주간의 추천 하에 사장이 임명한다.
2. 부장 : 각 부에 부장을 두며 부장은 기자 임기를 마친 자 중에서 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한다.
3. 총무 : 본보 발행에 관계된 모든 재정과 회계를 담당한다.
4. 기자 : 기자는 견습기자로 선발되어 6개월간의 견습교육을 성실히 마친 자로써 편집국장의 추천으로 주간이 임명한다.
5. 견습기자
  - 가. 견습기자는 1학년 학생 중 매년 3월중에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선발한다.
  - 나.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,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을 부과한다.
  - 다. 필기시험의 문제 출제는 편집국장이 책임지며 면접시험은 주간, 편집국장 및 각 부서장이 담당한다.

## 제 4 장 징 계

**제8조(징계)** 학생기자에 대해 주간은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. 단, 징계 시에는 편집국장과 협의하며, 편집국장의 징계는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이를 행한다.

1. 경징계 (정직, 근신)
  - 가. 학칙을 위반하여 유기정학 이하의 징계를 받은 자
  - 나. 학업성적 불량으로 학사 경고를 받은 자
  - 다. 근무에 태만하고 기자로서의 품위를 실추시킨 자
2. 중징계 (해임)
  - 가. 학칙을 위반하여 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  - 나. 학사 경고를 연속 2회 이상 받은 자
  - 다. 신문의 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간의 승인 없이 행한 자

## 제 5 장 편집 및 취재

**제9조(기획회의)** 1. 본 사에 신문의 기획을 위하여 기획회의를 두며 주간, 편집국장, 담당부장으로 구성한다.

2. 기획회의는 편집국에서 준비한 기획안을 심의한다.

**제10조(편집회의)** 1. 본 사에 신문의 편집, 취재를 논의할 편집회의를 두며 편집국장, 담당부장과 기자들로 구성한다.

**제11조(원고)** 1. 모든 원고는 주간과 협의를 거친 후 지면편집에 사용하여야 한다.

2. 필요에 따라 외부인에게 원고 청탁이 가능하다

## 제 6 장 재 정

제12조(재정) 신문사의 경비는 본 대학 학생이 납부한 소정의 학보비와 기타 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한다.

## 제 7장 운영 위원회

제13조(운영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의 회장은 주간이 되며, 위원은 교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에 의해, 총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13.7.1.>

제 14 조 (운영위원회 임무와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본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사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3. 본사의 운영 및 기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본사의 전반에 관한 사항

부칙

1. (시행일) 이 사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내규) 이 사칙에 없는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.
3. 본 부속신문사사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이나 미비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내규) 이 사칙에 없는 사항은 별도 내규에 따른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